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06년 월 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재원 조달을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조성 (안 제2조)
 -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
 -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금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 보전협력금 징수비용 교부금
 - 「수환수렵장」 운용 수익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등
-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안 제5조)
 - 충청북도환경보전 자문위원회에서 대행

3. 의안전문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구성) 충청북도 환경보전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충청북도 일반회계 출연금
2.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3.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교부금
5. 순환수렵장 운영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도 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기금중 여유자금은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 관리에 필요한 기금예탁증서,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고, 환경과 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환경기본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등
2. 충청북도 자연환경보전조례 제15조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원에 의한 사업 또는 활동지원
3. 충청북도청풍명월21 실천협의회 운영 지원
4. 생태계, 생물종의 보존·복원사업 및 자연환경보존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5. 야생동물보호 관련 사업

6. 기타 도지사가 인정하는 환경관련 사업의 지원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되, 충청북도 환경보전지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2. 기금운용 결산보고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 ①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7조(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第133條 (財産 및 基金의 設置) ①地方自治團體는 行政目的의 達成을 위하여 또는 公益上 필요한 경우에는 財産을 保有하거나, 特정한 資金의 運用을 위한 基金을 설치 할 수 있다.

<改正1994.3.16>

②第1項의 財産의 保有, 基金의 設置·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改正 1994.3.16>

③第1項에서 "財産"이라 함은 現金외의 모든 財産的 價値가 있는 물건 및 權利를 말한다.

□ 충청북도환경기본조례

제25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도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